

## 第58回

##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本會議 會議錄 第2號

##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3月 25日(月) 午前 11時 03分

## 議事日程

1. 서울특별시종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서울특별시종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1 面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1 面
3. 서울특별시종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1 面
4.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재득의원 외 4인 발의) ..... 1 面
5. 서울특별시종로구'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 1 面
6.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11 面

(11時 03分 開議)

○議長 金憲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開議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鍾路區廳長 提出)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鍾路區廳長 提出)
3. 서울특별시종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鍾路區廳長 提出)

4.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재득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종로구'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時 05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 '9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玄壽漢 市民行政委員長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玄壽漢 市民行政委員會委員長 玄壽漢입니다. 존경하는 金憲中 議長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종  
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4  
건을 심사해 주신 시민행정위원 여러분께도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감사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금까지 기관장의 권한 사항이었던 감사권을 문  
민시대를 맞이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구정운동을 도모하고자 감사위원회를  
사회 각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 9인으로 구성하여  
감사방향 설정과 중대한 비위 내용 등을 심사하  
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바람직  
한 안건으로 사료되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우리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1인에서 2  
인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  
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변  
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경로목적  
의 효친휴가를 부여하며 현행규정의 운영상에 나  
타난 일부 복무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에 조례로 정하였던 여비의 종  
류, 액수, 이전비 및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등  
을 상위법인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행 및 적용시기에 대하여 상당한 논  
란이 있었으나, 종전 여비규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증개  
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沈載得議員 외 4인으로 발의된 내용  
으로 지난번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의결권 축소의 소지가  
있어 부결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요재산의 범위  
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을 15  
인 이내로 하고 우리 의원 5명을 위원회에 참여하  
는 내용 등으로 이는 의회의 구유재산 의결기능  
이 일부 축소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심  
의회에 의원이 참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시행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구  
민의 재산관리에 적극 참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  
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 '96년도 구유재산 관  
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 2건 및 착오 이관된 구유재산 4건을 서울시  
로 환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구민의 재산에 관  
련된 중요한 내용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질  
문과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부지매입 2건과 보신각 부지 외 2건은 승인하되  
구청 제1별관 건물에 대하여는 추후 감정평가를  
실시 변상해주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  
부 수정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  
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1996. 3. 2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3월 11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6년 3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6년 3월 22일)

상정 ·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감사실장 이종우)

가. 제안이유

-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전문가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내부인사로 종로구 감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활동, 주민감사청구사항의 심사와 기타 종로구 감사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을 가짐(안 제2조).
- 위원회는 9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인은 법조인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언론인 및 교수 등 사회 각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구의회 의원 1인과 공무원중(4급~5급)에서 3인을 위촉 · 임명토록 함(안 제3조).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구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인 감사실장은 재임기간으로 함(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계공무원과 관계인 등은 위원회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감사계장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안건과 회의록을 작성토록 함(안 제7조).

-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 위원은 안전심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를 통해 자료제출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안전심의와 관련된 조사 · 연구자료수집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가. 제정 목적

- 지금까지 기관장의 전횡권이었던 감사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코자 감사방향 설정과 중대한 비위내용 심사등 감사행정에 주민과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종로구감사위원회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
- 즉 기능, 구성, 회의방법, 비밀누설금지,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언급

다. 관련법규

&lt;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gt; 자문기관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

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는 미리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검토의견

- 자치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 조항별로 검토해보면 제3조제2항의 위원장은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내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조항에서 외부, 내부위원의 구분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의 경우는 애매한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달리 정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제11조 위원회의 수당 규정에서 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지급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공무원수당규정과 중복되는 바 예외규정을 두는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또 제9조 비밀누설금지 조항도 위촉위원에게는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를 득하여야 적용이 가능한 조항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비밀의 정의, 취급인가, 취급방법 등은 별도 규정하고 있음)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홍승태위원, 오금남위원, 정태순위원, 박문배위원)

- 위원회의 위원 9인 중 구의원 1인을 2인으로 할 수 있는지?
-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구분 중 구의원은 어느 곳에 속하는지?
- 위원회의 기능은?  
(답변자 : 감사실장 이종우)
-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까.

-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 내부위원으로 보고있습니다.
- 감사정책, 방향결정, 주민감사청구사항 등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5. 討論 要旨 : 심재득 위원 수정동의안

위원회 구성중 구의원 1인을 2인으로 하고, 공무원 3인을 2인으로 수정동의

6. 審査結果 : 수정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6. 3. 2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3월 11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6년 3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6년 3월 22일)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소속기관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기관별 연가를 확대조정 (3일 ~ 20일 → 4일 ~ 23일)
-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 가. 개정 배경

-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이 1995년 12월 14일 개정됨으로써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임.

## 나. 주요내용

- 비상근무자의 근무요령에 구체적 근무방법을 명시하고 근무상 책임사항도 새로이 규정
- 공무원연가 및 특별휴가 실시제도의 일부 변경

## 다. 관련 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 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무원복무규정 제31조(비상근무의 요령)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 소속직원을 비상 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검토의견

- 공무원복무규정 제31조의 비상근무요령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 이를 구체적으로 사고 방지와 사후조치를 하도록 근무요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비상근무체제의 허점을 방지한 개정으로 타당하며
- 공무원 연가 및 특별휴가 확대실시 제도는 국력신장에 맞춘 복지적 차원의 제도로써 타당함.

## &lt;실시내용&gt;

- 연가 : 20일 → 23일(6년 이상자)
- 공가 : 신체검사, 외국어시험 응시일(당초 : 신체검사, 동원훈련, 투표일)
- 포상휴가(6일) :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 특별휴가(10일) :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퇴직 때까지 1회

##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안철주위원, 정창희위원, 홍기서위원, 심재득위원, 천상욱위원)

-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6일을 실시하는데 주요업무의 기준은?
-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수는?
- 소속 공무원중 지참자와 조퇴자의 관리여부는?
-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현재 근무휴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 6년 단위로 23일 휴가의 기준 근거는?  
(답변자 : 총무국장 오병환)
- 정상적인 사무이외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64명입니다.
- 출장부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령에 따라 모든 공무원들과 형평에 맞춘 것입니다.

5. 討論 要旨 : 없 음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6. 3. 2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3월 11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6년 3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6년 3월 22일)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현행규정의 일부내용중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여비의 종류 →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 준용
- 여비 정액 →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 준용
- 이전비 →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 준용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가. 개정 이유

- 1995년도 12월 29일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임.

나. 주요 내용

-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였던 여비의 종류, 액수, 이전비,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등을 상위법인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 개정 내용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임.

다. 관련법규

- 국내여비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 대통령령 제14486호)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구분한다.

- 국내여비규정 제9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4의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라. 검토 의견

- 개정 전 조례는 여비의 종류, 여비 지급범 위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상위법인 국내여비규정과 중복되게 규정하였던 것을 금번 개정에서는 이를 상위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 다만, 시행 및 적용시기에 있어 상위법은 1995년 12월 29일 공포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공포일까지의 기간동안 공백이 초래되므로 이 기간 동안 여비 지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안철주위원, 정창희위원)

- 부칙에 공포일로부터 시행시 공무원 여비 지급에 대한 방안은?

- 여비 산정기준의 변동여부는?

(답변자 : 총무국장 오병한)

○ 시에서 준칙이 2월경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상 문제는 없습니다.

○ 여비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5. 討論 要旨 : 없 음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1996. 3. 2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3월 11일 ·  
심재득의원 외 4인

나. 회부일자 : 1996년 3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6년 3월 22일)  
상정 ·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심재득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이 1995. 5.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상위법에 일치시켜 입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의회의 공유재산 의결 기능이 일부 축소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에 구의회 의원이 참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중요재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삭제함(안 제3조).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은 구의회 의원 5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로 참석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제7항).

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종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조의2).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가. 개정 이유

- 본건은 1996년 2월 26일 제57회 임시회시 1차 부결된 안건으로
- 부결 이유로 의회의 의결대상 중요재산을 당초 3억에서 5억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 의결권의 축소가 초래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구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후 처리코자 부결하였던 의안으로 이를 의원 입법으로 보완코자 함.

나. 주요 골자

- 중요재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준용토록 함(안 제3조 삭제).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규정을 개정함.
  - 위원수 17인이내 → 15인이내
  - 위원 구청과장 → 구청 5급 이상 10인, 구의원 5인
  - 위원장 재무국장 → 부구청장

다.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78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라. 조문별 검토

- 제3조 삭제 : 상위법령과 중복규정한 부분이므로 조례를 삭제하여 자동적으로 상위규정을 적용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제6조제1항 개정 : 당초 총위원 17인을 15인으로 적정 규모로 개정
- 제6조제2항 개정 : 당초 위원장이 재무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구청 과장에서 구의원 5명과 5급이상 공무원 10인으로 구성
- 제6조제7항 삭제 : 위원인 과장이 회의에 참석치 못할 경우는 소관 계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제6조제6항 의 결정족수 규정과 배치됨.
- 제6조의2(위원회 수당 지급규정 신설) : 위촉 외부 위원이 5명이 참여하게 되므로 위촉 위원에게 실비 변상

마.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제2항 규정 즉,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한다는 상위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개정안의 시행상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 청취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정창희위원, 천상욱위원, 박문배위원, 안철주위원, 홍승태위원)

-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상위법의 위법소지로 제6조제7항과, 구청장이 심의회의 의결을 귀속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기관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귀속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 공유재산심의회에 구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 공유재산심의회는 한달에 몇 회 개최합니까?

(답변자 : 심재득의원, 재무국장 김성태)

- 실무자인 재무국장이 위원장 궐석시 부위원장 자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님의 대안은 타당하다고 보며, 공유재산심의회의 결정사항이 구청장을 귀속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한달에 1회 정도 개최합니다.

5. 討論 要旨 : 박문배위원 - 부위원장에 구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동의  
홍기서위원 - 원안가결  
(표결 : 박문배위원 - 2표, 홍기서위원 - 5표)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자구 수정

제6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 10인으로”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으로 자구 수정

서울특별시종로구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審 查 報 告 書

1996. 3. 2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3월 18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6년 3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6년 3월 22일)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성태)

가. 제안이유



- 주민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2건 및 착오이관된 시유재산 환원 3건 및 미정리 재산 1건을 정리하는 내용의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한 명륜 3가 1-1042(대: 320.7㎡, 건물 149.65㎡) 부지를 감정평가후 소유자와 협의 매입.
-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평창동 344-6(627㎡) 부지매입.
- 공유재산으로 착오이관된 관철동 45-3(대: 191.7㎡) 보신각 부지, 창신동 660-68(대

: 6.9㎡) 한양성곽 부지, 신문로 2가 2-1 시립미술관 건물(3개동), 수송동 146-2 구 청 제1별관 건물(일부)을 서울특별시로 소유권 환원.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가. 주요 내용

<변경내용>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이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른 변경안임.

<주요내용>

[단위 : 천원]

| 구 분         | 소 재 지        | 면 적(㎡)   | 취 득 가 액 | 취 득 사 유                                              |
|-------------|--------------|----------|---------|------------------------------------------------------|
| 취 득         | 명륜3가동 1-1042 | 320.7    | 339,974 | 청소년회관 신축부지                                           |
| "           | 평창동 344-6    | 627      | 556,500 | 어린이집 신축부지                                            |
| 환 원<br>(반환) | 관철동 45-3     | 191.7    |         | 보신각 부지                                               |
| "           | 창신동 660-68   | 6.9      |         | 한양성곽 부지                                              |
| "           | 신문로 2가 2-1   | 4,153.78 |         | 시립체육관 2,089.95<br>체육관 880.99(별실)<br>도서관 1,183.54(별실) |
| "           | 수송동 146-2    | 2,693.1  |         | 구청별관 3, 4, 5층 건물                                     |

나.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 예산과 사업 예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검토의견

- 취득재산은 청소년회관과 어린이집 신축 부지의 매입 건으로써, 명륜 3가동 대상부지는 사유지로서 위치나 가격상 건립 적지로 조속한 구입이 요구되며, 평창동 어린이집 부지는 시유지로서 시의회에서 매각 의결이 있어서 조속한 매입이 불가피

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안으로 다같이 주민복지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할 사안이며

○ 환원재산은 그 사유나 경위, 이해득실,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 <환원대상 재산별 사유>

| 소 재 지      | 면 적                       | 환 원 사 유                                                                                                                                                     |
|------------|---------------------------|-------------------------------------------------------------------------------------------------------------------------------------------------------------|
| 관철동 45-3   | 토지 191.7m <sup>2</sup>    | ○서울시 지정 문화재인 보신각 부지로 총 12필지중 11필지는 국유 또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으나 1필지만 구소유로 된 바, 문화재 지정권자인 서울시상 소유로 환원함은 타당하며 구 소유로 보존하더라도 재산상 실익은 없음.                                |
| 창신동 660-68 | 토지 6.9m <sup>2</sup>      | ○국가지정 사적문화재인 서울성곽주변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이며 대규모 근린공원지역으로 '88. 9. 10 시·구간 재산 조정지침에 의하면 10만m <sup>2</sup> 이상 근린공원은 시유재산으로 하여야 하나 당초 착오로 구유로 한 재산으로 1평 미만의 경제성이 없는 토지임. |
| 신문로2가 2-1  | 건물 4,153.78m <sup>2</sup> | ○국가지정 사적 제271호인 경희궁내 건물로서 토지는 시유지이며 그 지상건물로 당연 시유로 하여야 하나 착오로 구유로 한 재산임.                                                                                    |
| 수송동 146-2  | 건물 2,693.1m <sup>2</sup>  | ○구청별관 3, 4, 5층 건물에 대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중요하므로 별도 유인물 내용 참조                                                                                                         |

####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박문배위원, 안철주위원, 오금남위원, 홍기서위원, 정창희위원, 심재득위원, 정태순위원)

- 구청사 부지에 관해서는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평창동 어린이집 운영계획과 명륜동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은?
- 명륜동 청소년회관 부지확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구 청사 제1별관 건물분에 대하여 협의보상 여부는?
- 소방서 건물 증축부분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 중요한 안건은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답변자 : 재무국장 김성태, 총무국장 오병한, 시민국장 김현식)

- 86년도 당시 시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후 행정착오인 것 같습니다.
- 명륜동 청소년회관은 독서실 상담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으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의 의견 및 구의원의 요구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 서울시로부터 환원공문을 받았습니다.
- 조건부로 증축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 5. 討論 要旨 : 정창희위원 동의안

취득재산 2건과 환원재산 3건은 원안대로 동의하고, 환원재산 1건

(수송동 146-2. 제2별관)은 동의하  
지 않기로 함.

6. 審査結果 : 수정 동의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議長 金憲中 玄壽漢 市民行政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9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鐘路區廳長 提出)

(11時 15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李炯述 都市建設委員長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長 李炯述 都市建設委員會 委員長 李炯述입니다.

존경하는 金憲中 議長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58회 임시회 기간 중 생업에 바쁘신중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 관계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까지 종로구 관내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서울특별시 조례에 근거

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 제7조 내지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주차요금의 책정근거 및 부과기준 설정 그리고 주차장 설치 시 용자부분에 대하여 논란이 다소 있었으나 정부시책인 도심지 차량진입 수요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 審 查 報 告 書

1996. 3. 2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3월 11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6년 3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년 3월 22일)  
상정 ·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조학래)

가. 제정이유

- 우리구에 설치된 각종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골자

-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기준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규정
- 노상주차장에 대한 제규정
- 노외주차장에 대한 제규정

○ 노외주차장에 대한 용자규정 등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윤주형)

- 현재까지 종로구 관내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서울특별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것을 주차장법 제3조 동법 제7조 내지 동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서
- 주요내용을 보면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징수기준을 설정하였고,
-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별한 경우 용자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적법화를 기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 3조(세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노상주차장의 수입 구분의 불명확성이 있고,
-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등에 따른 관리규정이 없는 바 앞으로 허가신고시 업무처리에 혼란이 예상되고
- 조례 제16조제1항의 제2호, 제3호도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자규정과도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3조제2항 주차요금 가산금은 별표 1의 요금의 4배로 규정하고 있음은 너무 과중한 가산금이 아닌지 적정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주차요금 별표 1의 경우 종로구 관내 주차장을 4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 노상 주차장과 노외주차장별 시간별 요금을 정하고 있음은 종로구 주차 여건 및 도로 여건과 통행차량의 양, 차량 종별 보유현황 등 구체적인 기초조사에 의한 급지를 구분하였는지 여부와, 주차요금의 책정 기준은 심도있

는 검토가 요구됨.

- 별표 2 하역 주차요금은 1급, 2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요금은 일반주차요금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유도 소명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 4급지 2항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 허가 및 관리에는 많은 행정력과 민원의 소지가 예견되는 바,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4. 質疑 및 答辯의 要旨

(질의자 : 나재암위원, 김이환위원, 강래규위원, 선상선위원, 현효선위원, 이병문위원)

- 4대문 안에는 차량공해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하는데 완화되는 견해는?
- 1급~4급으로 구분 및 요금 책정 근거는?
- 용자시 주차장특별회계 제3조(세출)의 보완이 필요한데 견해는?
- 1급지 경과시 15분에 2천원 부담은 많은데 개선용의는?
- 요율 조정 가능여부?
- 창신2동 성곽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여 제구실을 못하는데 견해는?
- 창신1동 완구도로가 불법주차로 변했는데 조치방안은?
-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에 대해 조치시행할 의향은?
- 6m 미만 도로에 한면만 시행할 방안은?  
(답변자 : 도시정비국장 조학래)
- 주차장 수요억제 시책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 종로구 1급~2급만 해당되며 시에서 시행하던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노상·노외주차장 부분의 용자가 가능토록 별도 보완하겠습니다.
- 차량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도심지 차량억제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 단속을 강화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 '96.7.1 실시 예정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현장 검토후 융통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 討論 要旨 : 없 음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7.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議長 金憲中 李炯述 都市建設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閉會를 선포합니다.

(11時 19分 閉會)

○出席議員 18人

金憲中 洪承台 玄壽漢 李炯述 安哲柱

|     |     |     |     |     |
|-----|-----|-----|-----|-----|
| 李炳文 | 吳錦南 | 玄孝善 | 沈載得 | 李萬魯 |
| 鄭泰淳 | 丁昌熙 | 朴文培 | 洪起瑞 | 康來奎 |
| 金以煥 | 金正大 | 宣相善 |     |     |

○出席關係公務員

|             |     |   |
|-------------|-----|---|
| 副 區 廳 長     | 權   | 哲 |
| 總 務 局 長     | 吳 炳 | 漢 |
| 市 民 局 長     | 金 賢 | 植 |
| 都 市 整 備 局 長 | 趙 學 | 來 |
| 財 務 局 長     | 金 誠 | 泰 |